

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업무처리지침

2023. 2.

[별표1] 평가표

□ 해외 연수지원 평가표

<평가항목 및 평가지표, 배점>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1차 평가 기준	추진의지	지원동기 및 목표, 연수계획에 대한 구체성·적절성 등	30
	연수자 노력도	포트폴리오의 완성도, 구체성, 노력도	30
	연수자 발전가능성	연수결과의 활용계획, 연수종료 후 발전가능성	40
	합 계		100
2차 평가 기준	연수내용의 적합성	기간별 연수수행계획의 현실성, 구체성	30
	지원필요성	건축설계인재육성사업 추진 목적에의 부합성	30
	연수자 역량	연수자역량(포트폴리오), 창의성 등 계획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	40
	합계		100

<가점 기준>

구분	내용	배점
국내 신청자 (공통)	해외 경험이 없는 국내 신청자의 경우(국내 대학 졸업자 등)	3
연수계획 확정여부 (공통)	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수계획(연수기관, 연수일정 등)을 확정 한 경우	3
소속기관 추천서 (재직자)	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의 추천서(대표자 날인 포함)를 제출한 경우	3

주) 신청자가 가점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차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적용

[별표2] 비용 지원 세부기준

□ 해외 연수지원

<항목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>

지 급 항 목	지급기준	지 급 방 법
체재비(월지급액)	2,200천원 / 월	정액지급
왕복항공료	5,000천원 이내	실비지급
비자발급비	3,000천원 이내	
사전교육비	2,000천원 이내	

- 1) 출국 및 귀국 항공노선은 해당 훈련지역 최단경로로 예약하여야 한다.
- 2) 항공료 정산시 항공여정안내문, 영수증, 예약확인증, 항공운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항공료는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
- 4) 비자발급비는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한다.
- 5) 사전교육비는 출국전까지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한다.
- 6) 연수자별 연수비 총액은 30,000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- 7) 체재비는 분기별로 지급(3월, 6월, 9월, 12월)하며 지급일은 25일로 한다. 단,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.